

의안번호	2125948
의 퇴 인	강민정 의원
회 답 일	2023.12.27.
추계번호	23C50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3항)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의4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6 (수업 중 임시 분리)	(제1항)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여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 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량규정
		(제2항) 교원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임시 분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제4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임시 분리된 경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상태에 있거나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안 제18조의6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1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기 어려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 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3항)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의무규정
		(제4항)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의 상담업무가 과중하거나 급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안 제18조의6 (수업 중 임시 분리) 안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18조의4 제3항 및 제4항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후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

상담 등을 받게 될 학생수, 관련 지원비용 등을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전문가의 상담 등이 2023년 현재 학교내·외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교사 등에 의해서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적을 수 있으나, 「학교보건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유사하게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거쳐 병·의원의 전문치료 및 상담까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범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상당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안 제18조의6은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시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 전담인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별도 공간 마련 여부, 전담인력 추가 배치 여부,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신규개발 여부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관련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공간과 전담인력, 상담·교육프로그램을 기존 학교 및 위(Wee)센터 등의 장소·인력·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 관련 재정 투입규모가 미미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공간 신규 조성, 추가인력 채용, 신규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분리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의 결정을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¹⁾, 분리기간 동안 ‘교육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9조의2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상담사 관련 인건비를 전문상담교사 관련 인건비로 전환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2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1)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 분리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가능하도록 함

두어야 하는 학교규모 기준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채용해야할 전문상담순회교사수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표] 전문상담(순회)교사 정·현원

(단위: 명)

	(국·공립)정원	현원	
		(국·공립)학교 내	(국·공립)학교 외
전문상담교사	3,940	3,932	-
전문상담순회교사	828	-	826

주 1. 학교 외 배치는 위(Wee)센터 712명, 위(Wee)스쿨 2명, 교육(지원)청 105명, 기타 시도 교육청 소속 기관 7명의 합계임

2. 사립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844명을 제외한 숫자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2022년 기준 교육통계에 의한 국·공립 초등학교 6,090교, 국·공립 중학교 2,625교, 국·공립 고등학교 1,428교, 국·공립 특수학교 102교 등²⁾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상담교사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³⁾
- 다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학교 위(Wee)클래스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사가 2,419명, 학교 외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사가 694명으로,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2/3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사 외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도 위(Wee)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문상담사 등 인력과 소요 인건비를 전문상담(순회)교사 인건비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 전반에 관한 사안이 가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2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는 학교규모 기준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채용해야할 전문상담순회교사수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에 따라 동 개정안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이외에 국·공립 고등공민학교 1개교, 국·공립 각종학교 37개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66개교가 있음

3) 개정안에서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 수는 전체 필요학교수에서 제하여 질 수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